

- 1.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의 추진 현황 보고
 - 2.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협의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또는 첨단의료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및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정부의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 중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의 업무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청을 지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안 제2조)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하여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직제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나. 질병관리청의 인사·예산·감사·법령 질의 등에 관한 보고(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질병관리청장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예산요구서·예비비사용요구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에 관한 회신 등 인사·예산·감사·법령 질의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의 정책협의회 등 개최(안 제8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질병관리청장과 질병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환경부령 제89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제3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제32조의 제목 “(오염원 등의 조사방법)”을 “(오염원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하여야”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제1호 단서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위탁처리하여야”를 “위탁처리해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3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를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84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을 말한다.

-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폐수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의 변경

나.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시설 및 장비의 변경

2.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다.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라.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기술능력의 변경

② 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변경 전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은 별표 20의2와 같다.

③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20의3에 따른 검사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④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 사본

2. 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용량계산서

3. 직전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최초 정기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직전 정기검사 이후 폐수처리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

5.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전·유지관리계획서

6. 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⑤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검사방법 등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① 시·도지사는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선명령의 경우: 1년

2. 사용중지명령의 경우: 6개월

②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제106조제1항제3호 중 “등록”을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변경등록”을 “변경허가·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7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 폐수처리시설의 종류·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06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검사기관에 현금으로 납부

별표 2에 제59호부터 제6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 과불화옥탄산(PFOA)

60.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61.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의 표 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별표 14 제2호사목 중 “등록을 한”을 각각 “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단서 중 “영 제79조제2호”를 “법 제62조제2항제2호”로,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별표 14의3 제2호4)의 위반사항란 중 “해소된”을 “없어진”으로 한다.

별표 20의 제목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을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등록기관”을 각각 “허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등록번호”를 각각 “허가번호”로 한다.

별표 20의2 및 별표 20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의 제목 중 “(제91조제2항 관련)”을 “(제91조제3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 중 “등록기준”을 “허가요건”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 중 “등록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나목5)부터 7)까지를 각각 6)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8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2호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	----------------	----	------------	-------------	-------------

별표 22 제2호사목1)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3)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증”을 “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목 3)의 행정처분기준의 3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4)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목 4)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5)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기준”을 각각 “허가요건”으로 하며, 같은 목 7)다)의 위반사항란 중 “변경등록을 하지”를 “변경허가를 받지”로 하고, 같은 목 8)가)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중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을 “영업정지 3개월”로,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목 8)가)의 행정처분기준의 2차란 및 같은 목 8)나)의 행정처분기준의 4차란 “등록취소”를 각각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11)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로 하며, 같은 목 11)의 근거법령란 “법 제64조”를 “법 제64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14)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별표 22 제2호사목14)의 근거법령란 “법 제64조”를 “법 제64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17)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목 18)의 위반사항란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1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로 하고, 같은 목 18)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같은 목 20)의 행정처분기준의 3차란, 같은 목 21)의 행정처분기준의 2차란 및 같은 목 22)의 행정처분기준의 4차란 “등록취소”를 각각 “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목 23)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사목26)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27) 및 2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폐수처리업의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3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7)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폐수처리업자가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폐수처리업자가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3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8) 그 밖에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3항제2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	--------------	----	----	-------------	--

별표 23 제4호 중 “등록”을 “허가”로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부터 별지 제4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기한까지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 2022년 12월 31일
2.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 2023년 12월 31일

[별표 10의2]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

1. 방제조치에 사용된 방제 자재·약품 등 소모된 물품 비용. 다만, 방제조치에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2.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기구의 임차료
3. 방제조치를 위하여 배출 및 회수된 오염물질과 그 밖에 오염물질과 관련된 물건의 제거·운반 또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

[별표 20의2]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 가. 폐수처리업자는 수탁받은 폐수(이하 “수탁폐수”라 한다)를 다른 수탁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폐수가 발생한 공정과 폐수의 성분·성상 등을 파악한 후, 혼합 처리 과정에서의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유해성(이하 “유해성등”이라 한다)을 확인(이하 “혼합확인”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폐수처리업자는 수탁폐수의 혼합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위탁자에게 수탁폐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 유해성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혼합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
- 다. 혼합확인을 위한 시료의 혼합비율은 수탁폐수와 혼합하려는 폐수의 양의 비율로 한다.
- 라. 폭발성 가스를 측정할 경우에는 주변에 전기, 불꽃, 화염, 마찰열 등 발화 원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시행한다.
- 마. 혼합확인을 하는 자는 보호장갑, 보호경 등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2. 수탁폐수 간 혼합확인 시 확인사항

- 가. 폐수처리업자는 수탁폐수를 다른 수탁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유해성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사항 및 확인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확인사항	확인기준
1) 부식성	수소이온농도	pH 2.0 이하 강산성 또는 pH 11.5 이상 강염기
2) 폭발성	가연성가스농도	메탄 10% 이상
3) 자연발화성	자연발화 여부	5분 이내 자연발화 여부
4) 유해성	황화수소농도	10ppm 이상
	이산화탄소농도	1.5% 이상
	산소농도	18% 미만 또는 23.5% 이상

- 나. 가목에 따른 확인사항을 확인할 때에 유해성등의 확인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폐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처리하도록 해야 하며, 폐수처리업자의 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폐수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반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다.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할 때 10℃ 이상의 급격한 온도 상승이나 가스·연기·악취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혼합 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확인사항별 확인방법

가. 부식성

- 1) 혼합확인을 위한 시료는 내부식성(부식을 견디는 성질) 용기에서 혼합한다.
- 2) 혼합 직후의 수소이온농도(pH)와 10분간 교반(휘저어 섞음) 후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여 측정값의 변화를 관찰한다.
- 3) 수소이온농도의 측정은 pH 측정기기를 활용해야 한다.

나. 폭발성 및 유해성

- 1) 혼합확인을 위한 시료는 밀폐용기에서 혼합한다.
- 2) 밀폐용기의 공기층에 흡입용 호스를 삽입한 후 가스농도측정기로 혼합직후의 가스농도와 30분 후의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측정값의 변화를 관찰한다.

다. 자연발화성

- 1) 혼합 직후의 온도와 10분간 교반 후의 온도를 측정하여 측정값의 변화를 관찰한다.
- 2) 혼합폐수를 구조토 또는 실리카겔을 채운 500ml 용량의 자기(瓷器)로 된 용기에 부어 5분 이내에 발화하는지를 확인한다.

4. 기타

- 가. 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같은 성상의 수탁폐수에 대해서는 혼합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배출공정 등의 변경으로 수탁폐수의 성상이 변경되었거나 성상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혼합확인을 해야 한다.
- 나. 수탁폐수 중 사진현상 등과 관련된 폐수(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폐수부호 중 P-1부터 P-6까지의 폐수를 말한다. 이하 “사진폐수”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지 않고 해당 사진폐수만을 별도로 수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혼합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다. 혼합확인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공인기관의 검정·교정을 받아야 하며, 검정·교정 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라. 폐수처리업자는 혼합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별표 20의3]

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

1. 저장시설

- 가. 저장용량은 최대 처리량의 3일분 이상일 것
- 나. 폐수처리방법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표시되어 있을 것
- 다.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일 것
- 라. 유입폐수와 보관된 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마. 그 밖에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에 맞는 구조·성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처리시설

- 가. 개별 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및 처리시설의 합계 처리능력 기준을 준수할 것
- 나.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와 부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 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 라.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구 및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마.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 바. 그 밖에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에 맞는 구조·성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뒤 쪽)

<p>신청인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해야 할 측정기기의 설치 부위 표시 도면 1부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 이용 등)을 적은 서류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부 	<p>수수료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p>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술자격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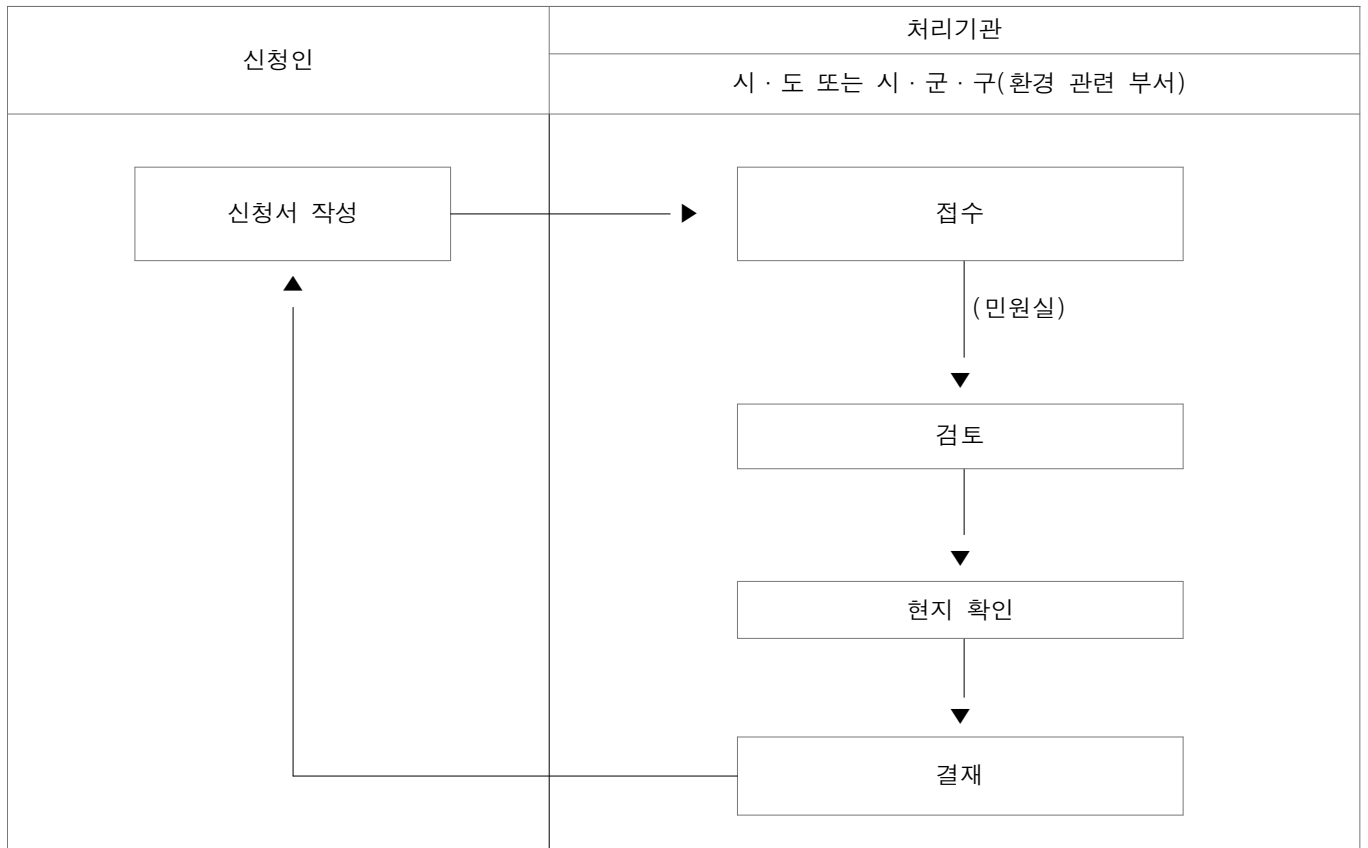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폐수 <input type="checkbox"/> 수탁처리업 허가증 <input type="checkbox"/> 재이용업				
제 호					
① 사업장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사무실 주소					
④ 사업장 소재지					
⑤ 처리 또는 재이용 대상 폐수				⑥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능력 또는 재이용시설의 처리능력	m ³ /시간
⑦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재이용시설					
시설명	규격	대수	시설명	규격	대수
⑧ 수질오염방지시설					
시설명	규격	대수	시설명	규격	대수
⑨ 폐수처리방법					
⑩ 폐수운반방법					
⑪ 허가조건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 <input type="checkbox"/> 수탁처리업 허가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재이용업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m²]

(뒤쪽)

< 변경사항 >

변경 연월일	변경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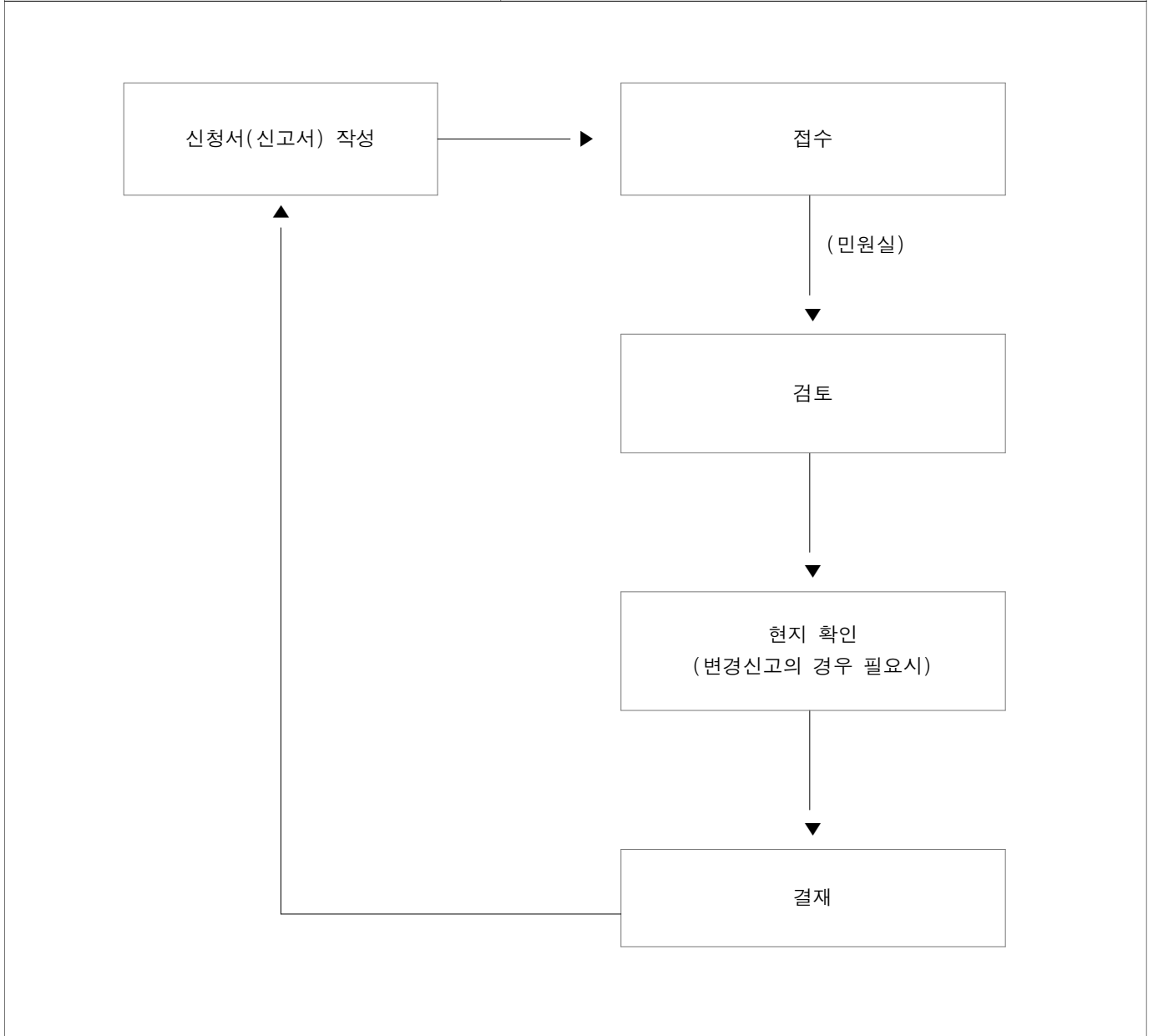
< 처분사항 >

처분 연월일	처분 내용

처리절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별지 제44호서식]

일련번호		폐수 위(수)탁 확인서			
제 호					
위탁자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수탁자	⑤ 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소재지			⑧ 전화번호	
구분		⑨ 단위	⑩ 수량	⑪ 비고	
폐수종류(부호)		()			
		()			
		()			
⑫ 특기사항					
폐수부호	H-1 도금산화계	H-2 도금환원계	H-3 도금혼합	H-4 실험실 폐수	
	H-5 그 밖의 중금속	A-1 폐산	K-1 폐알칼리	M-1 그 밖의 금속	
	P-1 사진현상	P-2 사진정착	P-3 사진세척수	P-4 인쇄제판정착	
	P-5 인쇄제판현상	P-6 인쇄제판세척수	B-1 보일러세관(녹제거)	B-2 보일러세관(중화)	
	G 귀금속 가공수				
EX 그 밖의 폐수(⑫ 특기사항란에 폐수의 종류·성상 등을 적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마목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차량번호:		확인자: 수탁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운전자:		확인자: 위탁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폐수처리업자는 확인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급하고, 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합니다.
2. 확인서는 2장을 작성하여 수탁자와 위탁자가 각 1장씩 보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별지 제45호서식]

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서

확인일시		확인자	(인)
확인목적	[] 혼합 저장 [] 혼합 처리 [] 기타 취급 ()	책임자	(인)

확인 대상					
저장폐수	폐수 종류(부호)	()	저장량(m ³)		
수탁폐수	상호(명칭)		수탁량(m ³)		
	폐수 종류(부호)	()			
혼합비율 (%)	저장폐수	수탁폐수	(산정근거:)		
폐수부호	H-1	도금산화계	H-2	도금환원계	
H-4	실험실 폐수	H-5	그 밖의 중금속	A-1	폐산
M-1	그 밖의 금속	P-1	사진현상	P-2	사진정착
P-4	인쇄제판정착	P-5	인쇄제판현상	P-6	인쇄제판세척수
B-2	보일러세관(중화)	G	귀금속 가공수	B-1	보일러세관(녹제거)
EX	그 밖의 폐수(폐수의 종류·성상 등을 적습니다)				

확인 결과						
구분	저장폐수	수탁폐수	혼합 직후	혼합 반응 후	위험·유해성 분류기준	
부식성	pH				pH 2.0 이하 강산성 또는 pH 11.5 이상 강염기	
폭발성	메탄(%)	/			메탄 10% 이상	
유해성	이산화탄소(%)				1.5% 이상	
	황화수소(ppm)				10ppm 이상	
	산소(%)				18% 미만 또는 23.5% 이상	
자연발화성	자연발화			[]유 []무	[]유 []무	5분 내 자연발화
기타	온도(℃)					
	가스 발생(연기 등)			[] 유 [] 무		
	악취 발생			[] 유 [] 무		
처리결과	[] 혼합 저장 [] 별도 저장 [] 반송					
특이 사항		사진대지				
		실험 전			실험 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6호서식]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검사 희망일부터 60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무소 소재지	

세부내용	시설 소재지	
	검사대상 시설	[] 폐수 수탁처리업 ([] 저장시설, [] 처리시설) [] 폐수 재이용업 ([] 저장시설, [] 처리시설)
	처리시설 구분 (처리시설을 검사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 증발농축시설, [] 건조시설, [] 소각시설, [] 물리·화학시설, [] 생물화학적처리시설, [] 기타시설 ()
	검사 희망일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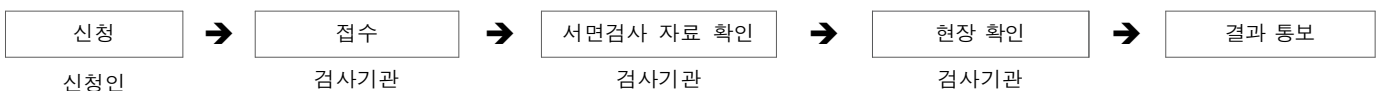
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 사본 2. 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용량계산서 3. 직전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최초 정기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직전 정기검사 이후 폐수처리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 5.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전·유지관리계획서 6. 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p>수수료</p> <p>「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p>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폐수처리시설 검사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상호, 주소, 전자우편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검사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따른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지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동의함 [] 동의 안 함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7호서식]

제 호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

상호(명칭)		업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검사 장소			
검사 연월일			
검사대상 시설			
검사 결과	(항목별 검사결과 붙임)		
검사자	(인)	(인)	(인)
특이 사항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정하고, 정기검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며, 검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는 전문연구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9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의2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포함한다), 분진(제철공정분진을 포함한다) 또는 폐금속류를 금속제품의 원료물질 제조를 위하여 혼합하여 사용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를 각각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로 하고,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이 조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생활폐기물 배출 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의6(중전의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4호의9서식”을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4호의10서식”을